

의안번호	2202886
의 퇴 인	정춘생의원
회 답 일	2024. 9. 4.
추 계 번호	24C3000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8조(자립 지원)	특별지원 보호시설(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3항제3호1)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8조(자립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자립지원 대상자 확대(안 제38조)

- 1)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(보호시설의 설치·운영 및 종류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(이하 "보호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
1. 일반보호시설: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
 2. 장애인보호시설: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
 3. 특별지원 보호시설: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5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

- 개정안에 따라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을 자립지원 대상으로 할 경우,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에 대한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구체적인 자립 지원 내용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음²⁾
- 개정안 시행에 따라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이후에도 자립 지원 의무가 발생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건복지부 또는 여성가족부 예산 사업의 대상과 규모가 확대될 수 있어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예상할 수 있음
 - 참고로 보호시설 내 자립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여성가족부의 “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운영지원 사업” 등의 예산사업을 통해서 지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, 2025년 예산안에 특별지원 보호 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 수당 예산 1억 2,400 만원이 반영되었음³⁾

□ 자립에 필요한 주거·생활·교육·취업 등의 지원, 그 외 자립지원 관련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용 및 규모 등의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이를 파악하기는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다만, 법 제39조의2에 따라 퇴소 이후 자립지원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,⁴⁾ 개정안에 따라 사업 대상만 일부 확대된다는 점을

2) 「아동복지법」 제38조제1항

1. 자립에 필요한 주거·생활·교육·취업 등의 지원
- 1의2.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
2.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(이하 "자산형성지원"이라 한다)
3.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
4.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
5.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 제38조(자립지원)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2. 아동복지시설(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만 해당한다)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

3) (산출근거) 30명 × (월)50만원 × 12개월 × 68.7%(서울 50%, 지방 70%)

- 4) 「아동복지법」 제39조의2(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 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, 종사자의 자격,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감안하면 재정소요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assembly.go.kr